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606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고A

변론 종결2022. 10. 25.

판결 선고2022. 11. 1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0. 3. 15.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1. 3. 18. 접수 제12538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소외 B에게 2013. 7. 17. 대출기한을 2013. 7. 19.부터 2018. 7. 18.까지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2020. 3. 15.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액은 19,794,924원, 2021. 12. 16. 원고의 B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액은 16,385,821원이다.

다. B는 2020. 3.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20. 4. 2.부터 2030. 4. 2.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2021. 3. 18. 피고에게 그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일 이전에 B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즉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법률행위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나, 담보제공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담보제공행위를 취소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당시 사해행위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사실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내지 11, 1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합계 765,354,700원 상당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B의 소극재산은 합계 1,002,292,283원

상당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무렵에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결국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담보로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담보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표1]

1	익산시 D에 있는 E빌라 제2층 F호(대지권 포함)	65,000,000
2	충북 영동군 G 공장용지 2,307㎡	196,095,000
3	충북 영동군 G 공장용지 지상 단층 일반공장 822.4㎡, 단층 일반공장(화장실) 7.1㎡, 단층 창고 304.2㎡, 단층 창고 55.11㎡, 단층 창고 18.06㎡	331,880,700
4	익산시 H 대 105㎡	28,980,000
5	익산시 I 답 530㎡	50,350,000
6	익산시 J 전 1,223㎡	77,049,000
7	충북 영동군 G 공장용지 지상차양, 미등기창고 등	16,000,000
합계	765,354,700	

[표2]

1	원고	19,794,924
2	주식회사 K	9,000,000
3	주식회사 L	229,027,918
4	주식회사 M	320,000,000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003,402
6	N 주식회사	11,665,000
7	○ 주식회사	7,761,000
8	P조합	39,977,039
9	근로복지공단	6,300,000
10	신용보증기금	213,969,000
11	충북신용보증재단	7,794,000
12	피고	50,000,000
13	Q	25,000,000

1	원고	19,794,924
합계	1,002,292,283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피고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대법원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어 그 원칙적인 방법은 원물반환이고, 달리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B에게 원물반환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상범

별지